무배당 AIG휴일교통재해장해 특별약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주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주된 보험계약은 "주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계약의 책임개시일 이후에 계약자가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주계약이 해지(解止) 및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거나,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의 총한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④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 3 조 (특약 내용의 변경)

①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때 이 특약도 주계약의 변경 내용에 따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특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 5 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부터 주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그러나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의 보험기간 이내에서 이 특약의 보험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동조 동 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개시일부터 그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합니다.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6 조 (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①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제2항에 의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경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특약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일 때에는 회사에서 정한 별도의 방법에 따라 제1회 특약의 보험료를 정산한 다음 차 회 이후의 보험료는 주계약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③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제1조(특약의 체결, 효력 및 소멸) 제2항의 경우에는 특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특약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제 7 조 (보험료 납입연체시 특약의 해지)

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해지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함께 해지 됩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사는 주계약에 정한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6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3항의 규정을 따릅니다.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

제 9 조 (휴일의 정의)

이 계약에서 “휴일”이라 함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휴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토요일”, “일요일” 및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휴일”로 합니다.

제 10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별표1 "교통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교통재해"라 합니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별표2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

니다)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에게 약정한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을 지급합니다

장해등급별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장해등급	1구좌당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제1급	1,000,000원
제2급	700,000원
제3급	500,000원
제4급	300,000원
제5급	200,000원
제6급	100,000원

제 11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하여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중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그 각각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상태가 신체의 동일 부위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의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금만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다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2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장해일 때에는 새로이 발생된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③ 제1항에 있어서 그 교통재해 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부위에 또 다시 제2항에 규정하는 장해의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중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하여는 이미 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제3항 후단(後段)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의 책임개시일 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2. 제1호 이외에 이 특약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④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장해상태의 등급이 교통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통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상태의 등급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하여 장해상태의 등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2년 이내)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합니다.
⑥ 장해로 인한 급여금의 지급한도는 통산하여 1구좌당 1,000,000원으로 합니다.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급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수익자가 급여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특약을 해지하거나 특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3 조 (해약환급금)

이 특약이 해지 또는 소멸되었을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 14 조 (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급여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급여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15 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14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3)" 보험금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③ 회사가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이내에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 예정일 및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가지급제도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

로 통지하여 드리며, 장해등급의 판정 및 지급할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을 우선적으로 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기 타

제 16 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단체취급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 17 조 (특약의 갱신)

주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별도의 신청이 없는 한 이 특약도 동시에 갱신된 것으로 합니다.

(별표1)

교통재해분류표

(무배당AIG교통재해장해특별약관의 [별표1] 교통재해분류표와 같음)

(별표2)

장해등급분류표

(무배당AIG재해장해특별약관의 [별표2] 장해등급분류표와 같음)

장해등급분류 해설

(무배당AIG재해장해특별약관의 장해등급분류 해설과 같음)

(별표 3)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휴일교통재해장해급여금 (제10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급여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급여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